

10. 自然公園法施行規則中 改正令

建設部令 第473號

자연공원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의4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설계의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 상업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33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6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나. 숙박시설지안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온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지구로 지정된 지구와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의 건축물의 높이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다. 공공시설안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집단시설지구안의 건축물중 요양원 및 연수원은 대지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건폐율은 100분의 5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외의 건축물은 건폐율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2. 집단시설지구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3. 공원시설별 기본구조, 형태, 사용할

재료, 외벽의 색채 등에 관하여는 공
원관리청이 정한다.

부 칙

제 5 조 제3항 중 “제4조의2 제1항”을 각
각 “제4조의4 제1항”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공원구역내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건폐율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부족한 시설공간의 확충 및 자연경관의 보호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집단시설지구안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 층수기준을 2층 이하로 제한 하던 것을 3층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건폐율을 상업시설지안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60 이하로, 숙박시설지안의 공공시설지안의 경우 100분의 40 이하에서 100분의 50 이하로 각각 완화하여 부족한 시설공간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제4조의4 제1항 제1호).

나. 집단시설지구외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하여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하, 높이는 3층 이하로 하되, 해안공원 및 해상공원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층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훼손을 최소화 함(제4조의4 제1항 제2호). (건설부 제공)